****

|  |  |  |
| --- | --- | --- |
| **C:\Users\82106\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Content.Word\Untitled-1-02.png** | **x** | **텍스트, 클립아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 해설서**

|  |
| --- |
| * **안내사항** ・ 본 계약 해설서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있습니다.・ 본 계약 해설서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본 법률문서 양식만을 사용하실 때는 저작자 및 출처 표기가 필요 없으나 본 계약 해설서를 사용하실 때는 본 해설서에 대한 저작자와 출처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을 수정, 보완, 삭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수정, 보완, 삭제, 변경된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을 배포하실 때에는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과 동일한 조건의 라이선스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은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이 어떠한 법적 효력 또는 표준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분쟁 및 손해 등에 대하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ZUZU가 책임을 지지 않는 점에 동의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용하실 법률문서 양식은 변호사 등 권한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귀사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계약 해설서 제공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주주관리 서비스 ZUZU**

****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부여계약서**

[해설] 본 계약서는 일반 비상장 주식회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비상장 벤처기업은 본 계약서의 해설을 참조하여 각 기업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 비상장 주식회사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340조의5, 비상장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에서 정하고 있고,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3에서 특례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 (이하 ‘회사’)와 ◯◯◯ (이하 ‘대상자’)는 회사가 대상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1. **교부 주식의 종류와 수 및 행사가격**

회사는 대상자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을 교부한다.

1. 교부할 주식의 종류
2. 교부할 수량
3. 1주당 행사가격

[해설] 교부할 주식은 보통주식이 일반적이나 정관에 정함이 있을 경우 다른 종류주식도 가능합니다. 수량은 정량으로 정하거나 부여 시점의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 벤처기업의 경우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스톡옵션 부여방법**
	1. 스톡옵션 부여방법은, 회사가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행사 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해설] 회사 정관에, ① 스톡옵션 행사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②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방법, ③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금전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을 모두 정하고 있는 경우, 이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정한 부여방법을 기재합니다.

1. **스톡옵션 부여일**

스톡옵션 부여일은 2022. . . 로 한다.

[해설]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일이 됩니다.

1. **스톡옵션 행사기간**
	1. 대상자는 20xx. . .부터 20xx. . .까지 스톡옵션을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스톡옵션은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2. 대상자는 제1항의 행사기간 동안 회사에 재임하여야 한다.

[해설]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도록 상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기간 시작일은 위 기간 이후부터 정해야 합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행사기간 시작되기 전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정년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행사기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행사기간에 vesting을 두어 행사 수량(또는 비율)을 정하거나 연간 행사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스톡옵션 행사가격 및 주식수 조정에 관한 사항**
	1. 스톡옵션 부여일 이후 그 행사 전에 다음 각호와 같이 회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행사가격 및 주식 수량을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한다.
2. 무상증자(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의 경우 : 다음의 산식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  |  |  |
| --- | --- | --- |
|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x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 | 1주당 발행가격 |
| 시가 |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

1. 주식분할의 경우 :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한다.
2. 주식병합의 경우 :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한다.
3.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을 상환하여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 교부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장한다.

|  |  |  |
| --- | --- | --- |
|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x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 | 1주당 주주환급가격 |
| 시가 |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

1. 제1항에 의한 조정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별도의 절차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고, 회사는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지한다.
2. **스톡옵션 행사방법 및 절차**
	1. 대상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정한 스톡옵션 행사신청서에 행사할 주식의 종류, 수량, 행사일을 기재하여 2통을 작성하고 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행사가격 납입시기, 납입방법 등 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대상자는 회사가 통보한 절차에 따라 대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주식 또는 금전을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스톡옵션 행사의 효력**

대상자는 제6조에 따라 납입을 한 날로부터 회사의 주주가 된다. 다만, 납입한 날이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인 경우 그 기간 중의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에 따라 주주가 되는 시기는 주금납입일 다음날 입니다. 그러나 스톡옵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주금을 납입한 날 바로 주주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1. **스톡옵션 양도 및 담보제공 제한**

대상자는 본 계약에 따라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해설] 벤처기업의 경우 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1. **스톡옵션 부여 취소**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2. 대상자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로 퇴임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3. 대상자가 고의나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다만 대상자(이사 또는 감사인 경우)가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도 같다.
4.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5. (이사 또는 감사인) 대상자가 상법 제385조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경우
6. (일반 직원인) 대상자가 회사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 조치된 경우
7. 대상자가 스톡옵션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8. 스톡옵션이 압류된 경우
9. 대상자가 스톡옵션 행사를 위하여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한 경우
	1. 제1항 사유의 존재 여부 또는 스톡옵션 부여 취소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대상자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이사회 결의는 취소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2. 상법 제385조 제2항에 의하여 대상자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되거나 대상자를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법원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대상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고, 당해 소송에서 대상자는 해임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하며, 대상자를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결의 무효 또는 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을 포함)이 확정된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0. **회사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승계**
	1.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 되는 경우, 합병 계약에서 다른 회사가 대상자에 대한 본 계약상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상자는 합병결의 후 2주간 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대상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회사가 분할로 다른 회사를 신설하거나 회사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어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에 의해 다른 회사가 본 계약상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상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간 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대상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대상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일 이후 2년 내에 제1항의 흡수합병, 제2항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다른 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회사의 의무를 승계할 것을 합병계약, 분할계획, 분할합병계약의 각 내용으로 정해야 한다.
11. **비밀유지**

회사와 대상자는 본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1. **재판관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할 경우 회사의 본점소재지가 있는 곳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1. **기타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기로 한다.

본 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회사와 대상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 .

“회사”

“대상자”